

전임교원 보수 책정 지침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정관 제46조 및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루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용어의 정의) ① ‘보수’라 함은 급여와 상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 보수규정의 대학교원 봉급표에 의해 지급되는 재직기간과 직급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말한다.

③ ‘수당’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직책별로 지급되는 것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 3조(적용범위) ① 본교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용된 전임교원의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장 봉급

제 4조 (보수의 결정) ① 봉급 및 수당은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참고하여 호봉을 책정하되, 총장은 급여나 수당액을 조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 ‘규정 외의 수당’을 신설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급여를 조정하거나 수당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 이사회에 제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 2항의 승인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예산편성 승인으로 갈음한다.

④ 각종 수당의 지급액수는 신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급인 봉급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5조 (보수의 종류)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준하여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의 종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위 제4조 1항에서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보수의 지급) ① 전임교원의 보수는 대학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 ② 보수 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 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③ 보수지급은 교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 ④ 보직의 겸직자에게는 최대 2개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 7조(연봉계약) ① 총장은 신규 임용교원의 보수를 연봉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연봉은 경력이나 연구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② 총장은 임용자와 협의하여 연봉을 결정하고, 4대보험 개인부담금은 임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연봉 계약시에는 각종 수당지급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호간 협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월 연봉의 1/12씩 지급한다.

④ 임용 및 승급 등으로 인한 연봉책정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장 호봉확정과 승급

제 8조(호봉산정) ①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한 경우에는 경력이나 직위에 따라 호봉을 확정한다.

② 승급은 매년 3월과 9월 호봉 재산정 결과에 의한다.

제 4장 퇴직금

제 9조 (명예퇴직자 수당지급) ① 본교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 예정일 전 5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할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① 루터대학교 ‘전임교원 보수 책정 지침’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보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에 준하여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 (개정 2024.04.25.)

구분	내 용
본봉	직위에 따른 호봉액
정근수당	1월과 7월 2회 지급(근무연수에 따라 본봉의 50%~100%)
장기근속수당	근무연수 5년, 10년, 15년, 20년 이상자에게 차등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차등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급
효도비	매년 2회 설날, 추석 포함 달에 본봉의 50%씩 지급
초과 강의료	책임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강사료의 50% 지급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단, 학교 예산 범위 내 지급)

별표 2.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에 관한 규정 외의 수당

종류	직위	지급액(천원)	비고
보직수당	총장	1,000	
	루터대학원장	600	
	처장, 사업단장, 학장	500	
	감사실장, 루터미래교육원장, 인성교육원장	300	
	부처장, 전공, 원, 단, 센터, 관, 실 팀의 장	200	
	출판부장, 학보사 주간 그 외 부서의 장	100	
연구수당	총장	500	
	교수	736	
	부교수	706	
	조교수(2년 이상)	659	
	조교수(2년 미만)	595	
학생지도비	전 교원	50	
가계지원비	전 교원	연 150%	